『翰苑』「高麗記」에 보이는 고구려 官名의 구조와 특징*

이 규 호**

1. 머리말
2. 「高麗記」 官名의 복원
3. 6~7세기 官制의 계층구조와 상위 5官
4. 맺음말

초록: 『한원』「고려기」는 7세기 당대 고구려의 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취급되어 왔다. 이 가운데 官制와 관련된 기록은 이전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가장 자세하여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周書』부터 『한원』에 이르는 6~7세기 중국측 기록을 검토하면 『한원』의 관제구조는 『주서』의 시간적 배경인 6세기 중엽에 이미 형성되었다. 곧, 이들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당시 고구려 관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주서』와 『隋書』를 『한원』과 비교하면 일치하지 않는 관명이 있다. 사료의 서술 배경 등을 검토한 결과, 『주서』와 『수서』에 다른 계통의 관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전거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때 명칭 상 서열을 알 수 없는 이칭(異稱) 계통 자료들이 혼재되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한원』과 두 사서는 대부분 대응하고 있으며 『한원』에 전하는 관제 기록이 보다 현실에 가까웠음을 확인하였다.

『한원』에는 상위 5官이 국정운영의 주요사안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唐人의 시각에서 주요 부서의 결정권을 가진 자들로 이해되었다. 최근 발견된 묘지명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한원연구회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국외 한국학 자료와 7세기 동아시아-日本 소재 唐代類書, 『翰苑』 번이부의 종합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21 『高句麗 官制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4장 1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강사.

평대(評臺)라는 조직을 통해 이러한 국가정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평대는 6세기 중엽에 설치되었으며, 이 시기에 관제 역시 그에 맞게 정비되었다. 6세기 중엽에 등장한 위두대형(位頭大兄)은 그러한 과정의 핵심으로서 상위 5관의 하한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었다.

핵심어 : 翰苑, 高麗記, 官制, 官名, 評臺

1. 머리말

『한원』 蕃夷部 高麗條에는 당의 職方郎中 陳大德이 641년 고구려에 사신으로 다녀온 뒤[1] 찬술했다고 전하는 「高麗記」가 인용되어 있다.[2] 주로 고구려의 지리와 官名 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고구려의 내부사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진대덕이 고구려에 다녀오면서 직접 見聞한 정보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한원』 高麗條는 당대 고구려의 사정을 전하는 자료로서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원』 고려조에 인용된 「고려기」의 내용 가운데 현재까지 학계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아마 7번째 정문인 '官崇九等'일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고구려에 설치되었던 일련의 官名들을 확인할 수 있다. 1位官이라는 大對盧를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관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고, 전반적인 서열과 제한조건 등 현전 고구려 관명 기록 중 가장 자세하다. 특히 대대로의 선임에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력투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등, 태왕권을 위시로 하여 강력한 집권력을 구현한 4~5세기의 고구려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

1) 『자치통감』 권196, 太宗 貞觀15년 丙子.

2) 진대덕이 「고려기」를 편찬한 시점에 대해서는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85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한편,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의 원본으로 생각되는 「奉使高麗記」가 고구려에 대한 당의 첩보 보고를 종합한 것이라 파악하고, 진대덕 이외의 여러 사행들이 종합되어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武田幸男, 1994 「『高麗記』と高句麗政勢」, 『(于江權兌遠敎授停年紀念論叢)民族文化의 諸問題』, 세종문화사).

되고 있다.

「고려기」의 편찬 시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들은 7세기 중엽의 고구려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기」에 보이는 관명들은 6세기 중엽 이후의 상황을 전하는 『주서』와 『수서』 등에도 보인다. 이를 통해 『한원』 고려기의 해당 내용이 6세기 중엽 무렵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만 각 사서들은 명칭이나 서열 등이 『한원』의 내용과 다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왕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당시 고구려 관명들의 구조와 의미 등을 찾고자 하였다. 일찍이 고구려왕 책봉호의 품계와 『한원』의 고구려 관명들이 중국의 9품제에 비견되어 설명된 것을 종합하여 당시 고구려 관위제의 실상을 찾으려 한 연구가 있었다.[3] 그에 의하면 고구려왕의 책봉호가 3품 이상인 적이 없었으므로 『한원』에 보이는 고구려 관명의 比品은 실제로는 4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국의 통치를 위해 조직된 관명들이 국제질서의 이념 속에서 설정된 책봉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았다.

이후의 연구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원』의 比品은 실제가 아니라 찬자와 독자인 唐人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武田幸男에 의해 『한원』 고려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6~7세기 관위제의 구조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바 있다.[4] 그는 비슷한 시기 사서들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서열을 정리하는 한편, 고구려의 관직이 특정 관명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4계층 정도의 구분이 있었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대대로의 선임과정에 있어서는 복수로 존재한 2위인 태대형의 이칭이 莫何何羅支인 것에 주목하여 막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들 가운데 대대로가 선출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고구려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획기가 되었다.

---

3) 宮崎市定, 1959「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朝鮮學報』14.

4) 武田幸男, 1989「高句麗 官位制の史的展開」『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이후 큰 틀에서 武田幸男의 시각을 계승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가 제출되었다. 기왕에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小使者를 보입했던 것은 잘못이라 판단하는 한편, 그 존재로 인하여 4계층으로 구분했던 것 역시 『한원』에 보이는 대로 3계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5] 또한 고구려의 관명이 상위분화 이후 하위분화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사자는 두 개의 관명으로 나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6] 근래에는 고구려 유민 묘지명에 보이는 中裏官의 존재에 주목하여 태대형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막리지가 태대형에서 임명된 중리계통 관직이라 파악하기도 한다.[7]

이를 통해 6~7세기 고구려 관제와 관련된 대략적인 모습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高乙德 墓誌銘』에는 대대로의 선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할 단서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원』 「고려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두 사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고구려 관제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보고자 한다.[8]

2. 「高麗記」 官名의 복원

먼저 『한원』에 인용된 '官崇九等'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고려기」에는 당시 고구려의 官을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5) 임기환, 2004 「4~7세기 관등제의 전개와 운영」,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6)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406-407면.

7) 이문기, 2000 「고구려 막리지의 관제적 성격과 기능」, 『백산학보』 55.

8)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한원』 「고려기」의 '官崇九等'에는 지방관과 관련된 내용도 이전과 다른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가 중앙관과 지방관을 나누어 진행되었고, 하나의 논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상의 문제도 있어,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가-1. 高麗記에 이르기를 '그 나라는 官을 세움에 9등이 있다. 첫 번째는 토졸이라 하며 1품에 비한다. 옛 이름은 大對盧이며 국사를 모두 맡는다. 3년에 한 번 교대하는데, 만약 職에 걸맞는 자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혹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병사를 다스려 서로 공격하여 이긴 자를 대대로로 삼는다. 그 왕은 다만 궁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제어하지 못한다. 다음은 太大兄으로 [정]2품에 비하며 일명 莫何何羅支라고도 한다. 다음은 鬱折로 종2품에 비하며 중화의 말로 主簿이다. 다음은 太夫使者로 정3품에 비하며 또한 명칭을 謁奢라고도 한다. 다음은 皂衣頭大兄으로 종3품에 비견되며 일명 中裏皂衣頭大兄인데 東夷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소위 皂衣先人이다. 앞의 다섯 관으로서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관작을 뽑아준다. 다음은 大使者로 정4품에 비하며 일명 大奢이다. 다음은 大兄加로 정5품에 비하며 일명 縸支이다. 다음은 拔位使者로 종5품에 비하며 일명 儒奢이다. 다음은 上位使者로 정6품에 비하며 일명 契達奢使者, 乙奢이다. 다음은 小兄으로 정7품에 비견되며 일명 失支이다. 다음은 諸兄으로 종7품에 비하며 일명 翳屬, 伊紹, 河紹還이라 한다. 다음은 過節로 정8품에 비하된다. 다음은 不節로 종8품에 비하된다. 다음은 선인으로 정9품에 비하되는데 일명 失元, 庶人이라 한다.[9]

위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의 官으로는 대대로를 시작으로 하여 총 14개의 관명이 보이고, 이는 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중국의 9품에 맞추어서 서술되어 있다.[10] 그런데 비록 7세기 중엽의 사정을 전하는 「고려기」의 내용이지만 실제 이러한 형태는 보다 빨리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세기 중엽 이후의 중국 정사 고구려전과의 비교를 통해 원형을 복원해보겠다.

---

9) 『한원』 高麗. "高麗記曰,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捽, 比一品, 舊名大對盧, 惣知國事. 三年一代, 若稱職者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祗服, 皆勒兵相攻, 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禦. 次曰太大兄, 比[正]二品, 一名莫何何羅支. 次鬱折, 比從二品, 華言主簿. 次大夫使者, 比正三品, 亦名謂謁奢. 次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裏皂衣頭大兄, 東夷相傳, 所謂皂衣先人者也, 以前五官, 掌機密, 謀政事, 徵發兵, 選授官爵. 次大使者, 比正四品, 一名大奢. 次大兄加, 比正五品, 一名縸支. 次拔位使者, 比從五品, 一名儒奢. 次上位使者, 比正六品, 一名契達奢使者, 一名乙奢. 次小兄, 比正七品, 一名失支, 次諸兄, 比從七品, 一名翳屬, 一名伊紹, 一名河紹還. 次過節, 比正八品. 次不節, 比從八品. 次先人, 比正九品, 一名失元, 一名庶人." 표점과 교감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翰苑』, 210-211면을 따랐다.

10) 실제로 고구려에서 중국의 9품제와 같은 구조가 있었다기보다는 唐人의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붙였을 것이다(武田幸男, 앞의 책, 366면).

가-2. 大官으로는 大對盧가 있고 그 다음은 太大兄, 大兄, 小兄, 意俟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奢, 翳屬, 仙人, 褥薩을 아울러 모두 13등이 있으며 내외의 일을 나누어 맡는다. 대대로는 곧 강약으로써 서로를 범하고 빼앗아, 스스로 그것이[대대로가] 되고 왕의 임명으로 삼지 않는다.[11]

가-3. 官으로는 太大兄, 다음은 大兄, 다음은 小兄, 다음은 對盧, 다음은 意俟奢, 다음은 烏拙, 다음은 太大使者, 다음은 大使者, 다음은 小使者, 다음은 褥奢, 다음은 翳屬, 다음은 仙人이 있으니 모두 12등이다. 또 內評外評五部褥薩이 있다.[12]

가-4. 官은 大對盧, 太大兄, 大兄, 小兄, 竟侯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奢, 翳屬, 仙人이 있으니 모두 12등이며, 안팎의 일을 나누어 맡는다. 大對盧는 强弱으로써 서로를 범하고 빼앗아, 스스로 그것이[대대로가] 되고, 왕의 임명으로 삼지 않는다. 또 內評五部褥薩이 있다.[13]

가-5. 그 官으로 높은 것은[大者] 大對盧라 하고 1품에 비하며 국사를 총괄한다. 3년에 한 번 교대하는데 만약 직무에 맞는 자라면 연한을 한정하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혹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병사를 다스려 서로 공격하여 이긴 자가 된다. 그 왕은 다만 궁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제어하지 못한다. 다음은 太大兄이라 하는데 정2품에 비한다. 對盧 이하의 官은 총 12급이다.[14]

가-6. 官은 무릇 12급인데, 大對盧라 하는 것은 혹은 吐捽이라 한다. [다음으로] 鬱折이라 하는 것은 圖簿를 주관한다. [다음으로] 太大使者라 하며, [다음으로] 帛衣頭大兄이라 하는데 소위 帛衣라는 것은 先人이다. 국정을 장악하고 3년에 한 번 교대하는데 職을 잘하면 바꾸지 않는다. 무릇 교대일에 불복함이 있으면 서로 공격하는데, 왕은 궁을 닫고 지키다가 이긴 자를 받아들여 삼는다. 大使者, 大兄, 上位使者, 諸兄, 小使者, 過節, 先人, 古鄒大加가 있다.[15]

---

11) 『주서』 권49, 高麗. "大官有大對盧, 次有太大兄, 大兄, 小兄, 意俟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奢, 翳屬, 仙人並褥薩凡十三等, 分掌內外事焉. 其大對盧, 則以彊弱相陵奪, 而自爲之, 不由王之署置也."

12) 『수서』 권81, 高麗. "官有太大兄, 次大兄, 次小兄, 次對盧, 次意侯奢, 次烏拙, 次太大使者, 次大使者, 次小使者, 次褥奢, 次翳屬, 次仙人, 凡十二等. 復有內評外評五部褥薩."

13) 『북사』 권94, 高麗. "官有大對盧, 太大兄, 大兄, 小兄, 竟侯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奢, 翳屬, 仙人, 凡十二等, 分掌內外事. 其大對盧, 則以强弱相陵奪, 而自爲之, 不由王署置. 復有內評五部褥薩."

14) 『구당서』 권99상, 高麗. "其官大者號大對盧, 比一品, 總知國事, 三年一代, 若稱職者, 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祗服, 皆勒兵相攻, 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禦. 次曰太大兄, 比正二品. 對盧以下官, 總十二級"

가-1~6을 통해 4~5세기의 상황을 전하던 『위서』에는 보이지 않던 몇 가지 변화상을 집어낼 수 있다. 첫째,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대로의 등장과 선출방식이다. 대대로는 그 명칭으로 보아 『삼국지』에 보이는 대로의 분화형태인데, 이를 선출하는데 왕의 임명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1위인 대대로를 필두로 5위인 위두대형에 이르는 상위 5官이 국정을 총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대대로의 선출과 함께 왕권의 약화와 귀족권의 강화를 나타내는 주된 근거로서 거론되어 왔다. 셋째, 位頭大兄(皂衣頭大兄)과 意俟奢라는 새로운 관명의 존재이다. 관제는 당사국의 정치권력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관명이 등장했다면 그 배경과 역할 등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위의 여섯 사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6~7세기 중국사서에 보이는 고구려 관명

周書[16]	隋書	舊唐書	新唐書	翰苑
大對盧	太大兄	大對盧	大對盧	吐猝(大對盧)
太大兄	大兄	太大兄	鬱折	太大兄
大兄	小兄	對盧 이하 12官	太大使者	鬱折
小兄	對盧		皁衣頭大兄	太大使者
意俟奢	意侯奢		大使者	皁衣頭大兄
烏拙	烏拙		大兄	大使者
太大使者	太大使者		上位使者	大兄加
大使者	大使者		諸兄	拔位使者
小使者	小使者		小使者	上位使者
褥奢	褥奢		過節	小兄
翳屬	翳屬		仙人	諸兄
仙人	仙人		古雛大加	過節
褥薩				不節
				先人

15) 『신당서』 권220, 高麗. "官凡十二級, 曰大對盧, 或曰吐捽, 曰鬱折, 主圖簿者, 曰太大使者, 曰帛衣頭大兄, 所謂帛衣者, 先人也. 秉國政, 三歲一易, 善職則否, 凡代日, 有不服則相攻, 王爲閉宮守, 勝者聽爲之, 曰大使者, 曰大兄, 曰上位使者, 曰諸兄, 曰小使者, 曰過節, 曰先人, 曰古鄒大加"

표에 드러나듯 각 사서간 관명의 순서나 명칭이 서로 다르다. 특히『주서』,『북사』,『수서』의 경우, 형과 사자계열의 관명이 한데 모여 서술되어 있다. 서술순서가 서열의 반영이라는 보는 경우도 있으나,[17] 이는 단순히 같은 계열의 관명을 묶어서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18] 이 가운데 실제 모습은 품계와 이칭 등이 포함된『한원』이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된다. 같은 모습을 적은 것이라면 관명의 수나 명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사서 간의 관명 구성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구성을 알기 어려운『구당서』를 제외하고『주서』~『수서』와『한원』은 각각 位頭大兄과 意俟奢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서가 본래 같은 형태의 구조를 서술한 것이라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우선 기록의 누락이나 서술자의 오인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意俟奢에 대해 접근해보자. 실제 소지자나 취임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使者系 관명의 이칭 어미인 奢가 붙어 있으므로 일단은 사자 계통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한원』고려기와 대조하여 上位使者로 보거나,[19] 의사사의 奢를 잘못으로 여기고 6세기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位頭大兄으로 비정하기도 한다.[20] 하지만『주서』와『수서』의 兄, 使者 그룹 기술은 서열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사가 위두대형을 가리킨다고 보면 형계 관명 안에서 서열이 맞지 않게 되고, 상위사자로 보더라도 사자계 관명 안에서 서열이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사서의 관명 서술을 좀 더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주서』와『수서』의 내용을 전후 자료인『위서』및『한원』과 대조해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자 계통의 관명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위서』는 奢로서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고,[21]『한원』은 정식 명칭을 使者

16)『북사』는『주서』와 동일하여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17) 김철준, 1975「高句麗·新羅 官階組織의 成立過程」,『韓國古代社會硏究』, 지식산업사, 135-137면 ; 노중국, 2003「삼국의 관등제」,『강좌 한국고대사』2, 110-111면.

18) 武田幸男, 앞의 책, 368-369면.

19) 武田幸男, 앞의 책, 369면.

20) 임기환, 앞의 책, 221-223면.

로, 이칭으로 奢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사서의 근거자료가 서로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서』 고려전은 435년 북위 사신 李敖의 방문을 근거로,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는 당의 職方郎中 陳大德이 641년 고구려를 방문한 뒤에 남긴 『奉使高麗記』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 『수서』는 裴矩가 작성한 『東藩風俗記』가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22] 작성연대는 629~636년으로 『주서』와 같다. 이러한 원전들은 각 사서의 열전을 작성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명의 경우 『위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그것이 당대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기도 하고,[23] 『삼국지』와 『양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이전 사서의 내용을 거의 답습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서』와 『수서』 작성 당시 자료가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意俟奢, 褥奢, 翳屬 계열(異稱)과 使者, 兄 계열(本名) 자료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두 사서와 『한원』에서 각 계통별 관명의 서열이 부합하고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확보해 두었던 것 같다. 다만 관명 계열 안에서의 서열은 알았으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고, 大小로 구분되는 본명계열이 아닌 이칭계열은 잘 몰랐던 것 같다. 『주서』와 『수서』에 보이는 意俟奢와 褥奢가 『한원』에서는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한원』의 사자계 관명 가운데 拔位使者와 上位使者가 『주서』와 『수서』에는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사자와 소사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발위사자에 해당하는 관명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24] 발위사자는 5세기 중엽 이후에 세워진 충주고구려비에 확인되므로,[25] 6세기 중엽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을

---

21) 『위서』 권88, 고구려. "其官名有謁奢・太奢・大兄・小兄之號."

22) 이강래, 1998 「7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23) 『위서』에는 네 개의 관명만이 보일 뿐이지만 현전하는 금석문 등을 통해 4~5세기에 이보다 많은 관명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4)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생각해본다면 『주서』 등의 褥奢가 『한원』 발위사자의 이칭인 儒奢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다(임기환, 앞의 책, 221면).

25) 『충주고구려비』 "下部 拔位使者 補奴"(전면 9행)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원』 고려기에 의하면 상위사자, 제형의 이칭은 다수일 뿐 아니라, 이칭의 표현이 어색한 부분도 있다. 『주서』와 『수서』에서 이칭으로 표현되었으리라 짐작되는 관명 역시 이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 관명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짐작하게 해준다. 관명의 이칭이 음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大小로 구분된 상위 관명과 달리 그렇지 못한 하위 관명에 대해서는 혼란의 여지가 충분했을 것이다. 특히 제3자인 唐人의 시각에서는 본명과 이칭 계통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칭 계통의 자료 가운데 사자계임이 비교적 명확한 의사사와 욕사를 기계적으로 사자 계통의 처음과 끝에 넣고, 제형의 이칭인 翳屬을 이어붙임으로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주서』~『수서』에 보이는 小使者가 『한원』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 직관지[26]와 『일본서기』[27]를 활용하여 두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 하나는 『한원』에 소사자가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6품에 比하는 상위사자를 설명하면서 이칭으로 契達奢使者, 乙奢를 들고 있는데, 契達奢使者라는 이칭이 여타 사자계 관명의 이칭 표기와 맞지 않는 것에 착안한다. 즉, 상위사자의 이칭은 契達奢이고 그 뒤는 小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본래는 소사자와 그 이칭인 乙奢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28] 그 결과 『한원』의 해당 부분은 발위사자(儒奢, 儒相)-상위사자(契達奢, 狄相)-소사자(乙奢/乙相, 小相)의 순서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른 하나는 『통전』의 기록과 비교하여 소사자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원래 기술되지 않았을 것을 것으로 보고, 『한원』의 기록에서 대응되는 관명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契達奢使者의 使者를 衍文으로 보고, 契達奢는 상위사자의 이칭으로 파악하면서, 소사자는 발위사자로서 乙奢에 해당한다고 본다.[29] 이렇게 보면 발위사

26) 主簿, 大相, 位頭大兄, 從大相, 小相, 狄相, 小兄, 諸兄, 先人, 自位

27) 主簿, 大相, 位頭大兄, 大兄, 乙相, 達相

28) 武田幸男, 앞의 책, 359-360면.

29) 임기환, 앞의 책, 215면.

자(小使者/小相=乙奢/乙相)-상위사자(契達奢, 達相, 狄相)가 된다.

그런데 이 역시 전자는 狄相과 小相의 서열이 『일본서기』의 기재와 뒤바뀌어 있고, 후자는 乙相의 서열이 『한원』과 다르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서』~『수서』의 관명서술에 있어서 복수의 원전이 혼재되었다고 한다면, 같은 관명이 중복되어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종래의 大-小 구분에 따른 명칭이 아니라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동될 수 있다. 특히 『한원』의 경우 필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반복이나 글자상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칭이 음차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意俟奢나 契達奢使者, 乙奢 등이 誤寫, 錯綜되었을 가능성은 고려할만하다고 하겠다. 제형의 이칭이 셋인 것으로 보아 하위 관명의 경우 이칭이 복수로 전해졌을 수 있고, 발위사자와 상위사자의 이칭의 대응이나 서열이 섞여 이러한 기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자와 형계 관명이 하위분화할 때에 大小의 구분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소형과 소사자가 소형/제형, 발위사자/상위사자로 나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30] 소사자 자체는 발위사자와 상위사자로 분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추정은 A-6의 『신당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비록 『한원』에 비하면 불완전한 상태지만, 사자계 관명들은 『한원』과 거의 대응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원』의 발위사자와 『신당서』의 소사자만이 명칭 불일치인데, 이는 사실상 소사자와 발위사자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意俟奢는 어미의 계통으로 보아 사자계 관명인 것은 맞지만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위서』의 謁奢, 大奢가 『한원』의 태대사자, 대사자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소사자가 분화한 발위사자, 상위사자의 이칭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인 位頭大兄에 대해 살펴보자. 위두대형의 경우 『한원』보다 이른 『주서』~『수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유민들의 묘지명을 통해 唐 이전에 이미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30) 여호규, 앞의 책, 406-407면.

가-7. 曾祖 崩은 本蕃의 3品 位頭大兄이었다. 祖父 式은 2品 莫離支였고 국정과 병마의 업무를 홀로 다스렸다. 父親 量은 3品 柵城都督 位頭大兄兼大相이었다.[31]

가-7은 高質의 묘지명으로, 그의 증조와 부친은 모두 위두대형에 임명된 적이 있음을 전한다. 고질의 생몰연대는 625~697년이므로, 세대를 역산하면 증조가 위두대형에 임명된 시기는 6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두대형은 적어도 이 무렵 성립되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기록을 포함하여 현전하는 위두대형과 관련된 기록이 『한원』이나 가-7과 같은 유민 묘지명을 통해 제3자인 唐人에 의해 전해진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록은 작성 시기가 7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서』와 『수서』에서 위두대형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함께 생각하면 혹 7세기 이전에 위두대형의 전신으로서 별도의 관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주서』이래 『한원』에 이르는 6~7세기 고구려 관명의 서열과 명칭은 동일한 형태의 관제 구조를 달리 기록한 것이었다. 또한 『주서』와 『수서』가 이칭계통 관명의 혼선에서 보이듯 자체적으로 불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과 『위서』처럼 당대의 관명 가운데 일부만이 기록된 사례가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묘지명 자료의 경우 망자의 가문에서 제출한 行狀을 근거로 묘지명이 작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위두대형은 등장 당시부터 그 이름 그대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위두대형은 그 명칭에서부터 기존의 고구려 관명과는 이질적이다. 즉, 형계 관명이 兄을 원형으로 대형/소형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태대형/대형, 소형/제형으로 나뉜 것에 비해 위두대형은 대소의 구분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뿐더러 그 지위 또한 태대형과 대형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다. 기왕의 논의들에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6세기 중엽은 고구려사에 있어서 시기를 구분하는 획기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위두대형의 성립은 설치목적에 있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텐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

31) 『高質墓誌銘』 "曾祖崩, 本蕃三品位頭大兄, 祖式, 二品莫離支, 獨知國政及兵馬事. 父量, 三品柵城都督 · 位頭大兄兼大相."

마지막으로는 『한원』에 등장하는 不節과 過節의 문제이다. 兄, 使者와 같이 節로 묶인 하나의 그룹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칭에 있어서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기왕에 지적된 바와 같이 선인 이상으로 나아가는 승진에 관한 단서가 서술되어 있었고, 이것이 오해되어 관명처럼 기재되었을 것으로 봄이[32] 타당하다 생각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복원한 「고려기」의 내용을 통해 당시 고구려 관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겠다.

3. 6~7세기 官制의 계층구조와 상위 5官

고구려사에서 6세기 중엽이 하나의 전환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원』이 전하는 내용은 당대 고구려의 정치권력과 운영방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두대형이라는 새로운 관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설치 당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 나-1. 고려기에 이르기를 '그 나라는 官을 세우는데 9등을 두었다. 그 첫 번째는 吐猝로 一品에 비견되며 옛 이름은 大對盧이고 국사를 총괄한다. 3년에 한 번 교대하는데 만약 잘하는 자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혹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병기를 들고 서로 공격하여 이긴 자는 (대대로가) 된다. 왕은 다만 궁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제어하지 못한다. 다음은 太大兄으로 2품에 비견되며 일명 莫何何羅支라고 한다. 다음은 鬱折로 종2품에 비견되며 중국어로는 主簿이다. 다음은 太大使者로 정3품에 비견되고 또한 謁奢라고도 부른다. 다음은 皁衣頭大兄으로 종3품에 비견되며 일명 中裏皁衣頭大兄인데 동이에서 서로 전하는 소위 조의선인이다. 앞의 다섯 관으로써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관작을 준다…

나-1은 앞서 인용한 가-1의 일부로서 따르면 제5위인 위두대형 이상이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관작을 遷授한다'고 하여, 당시 고구려

32) 武田幸男, 앞의 책, 364면.

국정운영 전반의 중추였음을 전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상위 5官 소지자가 권력을 장악했던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그에 앞서 구조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대대로 이하 위두대형에 비견된 중원왕조의 품계가 1~3품인 것에 주목해보았다.

〈표 2〉 唐 5省 1臺의 명칭변화와 관서장의 품계

관서명	명칭의 변화	관서장의 품계
尙書都省	中臺(662)→文昌臺(684)	尙書令(정2품), 6部尙書(정3품)
門下省	東臺(662)→鸞臺(684)	門下侍中(정3품)
中書省	西臺(662)→鳳閣(684)	中書令(정3품)
秘書省	蘭臺(662)→麟臺(684)	秘書監(종3품)
殿中省	中御府(661)→殿中省(670)	殿中監(종3품)
御史臺	憲臺(662)→左右肅政臺(684)	御史大夫(종3품)

〈표 2〉는 당의 주요관부와 그 長들의 품계를 정리한 것으로, 이들의 품계는 정2품에서 종3품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상서, 중서, 문하성의 장관이 3품을 하한으로 하여 재상의 직임을 맡았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상의 직임이 국정운영의 중추였음을 생각해본다면, 종3품에 해당하는 위두대형 이상의 관명 소지자가 고구려 국정운영의 중추로 묘사된 것은 이들이 곧 고구려 내에서 재상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마침 관련 자료들은 이들의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힌트를 주고 있다.

〈표 3〉 고구려 상위 5관의 소관업무 및 比品

관명	취임 가능 관직	소관업무	품계
對盧	大對盧	국정총괄	1품
太大兄	莫離支	중서령, 吏部, 兵部[33]	2품
主簿	미상	문서, 호적[34]	종2품
太大使者	司府大夫, 拔古鄒加	왕실재정, 大鴻臚[35]	정3품
皂位頭大兄	大模達, 褥薩	군사, 지방관	종3품

상위 5관과 그에 관련된 직무를 위와 같이 정리하면 이들은 왕명출납, 인사, 군사, 조세, 외교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특히 이들의 직임을 당의 제도에 비견한 것으로 보면 재상으로 여겨졌던 3省 뿐 아니라 상서성 예하의 6部와 9寺에 해당하는 행정관부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의 재상이 3省의 長官이었다고 보면, 고구려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은 1위인 대대로와 2위인 태대형에 한정된다. 또한 3省 6部 9寺가 일정한 主司와 屬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당의 경우와 달리 고구려의 상위 5관이 관여한 부서 간에는 그러한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唐의 3품에 비견되었다는 점에 한정하면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자들로서 상위 5관 소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관장한 부서간의 조직은 唐의 그것과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인사, 군사, 재정 등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몇몇 관부들의 위상이 높았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관서조직의 발달을 상정해야할 것이다.

요컨대 『한원』 고려기의 찬자가 상위 5관의 지위에 대해 종3품을 하한으로 설정한 것은 이들이 중앙 주요관부의 책임자였던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상위 5관이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관작을 遷授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중추로서 주요 현안을 결정하였음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구려에서도 이러한 부서 혹은 기구를 일컫는 명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발견된 묘지명에 보이는 評臺가 주목된다.

---

33) 『구당서』 권199상, 고려전. "自立爲莫離支, 猶中國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 ; 『신당서』 권219, 고려전. "自爲莫離支專國, 猶唐兵部尙書·中書令職云" ; 自爲莫離支, 『자치통감』 권196, 貞觀16년 11월. "丁巳, 其官如中國吏部兼兵部尙書也"

34) 『신당서』 권219, 고려전. "曰鬱折, 主圖簿者"

35) 『한원』 고려조 인용 「고려기」. "又有拔古鄒大加, 掌賓客, 比鴻臚卿, 以大夫使爲之"

나-2. 조부 岑은 건무대왕에게 中裏小兄을 받고 垧事를 주관하였다. 견책을 받음으로 인하여 垧事에서 쫓겨나 외관으로 내려갔다.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遼府都督으로 승진하였다. 교를 받들어 對盧官에 임명되었고 예전에 의거하여 垧事를 주관하였으며 評臺의 직임에 임하였다.[36]

나-2는 최근 발견된 고구려 유민 묘지명인『고을덕 묘지명』으로, 여기에는 評臺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귀족평의회,[37] 국가정무 처결기관,[38] 태대형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합좌기구,[39] 당의 尙書臺에 준하는 기구[40] 등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 평대라는 명칭은 고구려 초기 국중대회 가운데 諸加評議[41]에 기원을 두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42]

이와 같이 평대가 국정운영과 관련된 기구로서 이해될 수 있다면, 그에 들어갈 자격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앞서 국정운영의 중추로서 상위 5관을 지목하였는데, 이것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나-2에서 고을덕 조부의 관력을 보면 對盧官에 임명된 후 평대에 임하였다고 하였다. 이 대로관에 대해서는 최근 제1위

36)『고을덕 묘지명』"祖岑, 受建武太王中裏小兄, 執垧事. 緣敎責, 追垧事, 降黜外官. 轉任經歷數政, 遷受遼府都督. 卽奉敎, 追受對盧官, 依舊執垧事, 任評臺之職"

37) 王連龍, 2021「唐代高乙德墓誌所見高句麗官制考」,『文史』134, 281면. 본래는 京畿지역의 정무처리기구로 이해하였으나(2015「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誌及相關問題硏究」,『吉林師範大學學報』2015-4, 33면), 최근에 수정한 듯하다.

38) 葛繼勇, 2015「신출토 入唐 고구려인〈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한국고대사연구』79.

39) 여호규, 2016「신발견 고을덕 묘지명을 통해 본 고구려 말기의 중리제와 중앙관제」,『백제문화』54, 271면.

40) 이성제, 2016「유민 묘지를 통해 본 고구려의 중리소형」,『중국고중세사연구』42, 448면.

41)『삼국지』고구려전.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42) 이 評臺라는 명칭이 유민 묘지명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본래 명칭은 따로 있되 관서명에 臺를 붙였던 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형한 기술일 수도 있다.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관명이 달리 표기되기도 하는 유민 묘지명의 특성상 評臺가 어느 쪽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정 주요사안의 논의 및 결정이라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고구려 초기부터 이어져 온 評議의 성격이 남아 있었을 것이므로 '評'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관으로서 대로의 존재를 설정하고, 『한원』 등에 보이는 대대로를 3년의 임기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직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43] 이에 따른다면 평대의 자격으로는 1위인 대로만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대를 국정운영과 관련된 기구로 본다면 상위 5관으로 그 자격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44]

그러한 점에서 위두대형이 6세기 중엽 등장하여 상위 5관의 하한에 위치해 있는 것은 단순히 官制상의 서열만으로 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원』 고려기에는 위두대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도 전한다.

> 나-3. 그 武官은 大模達이라 하는데 衛將軍에 비견되며 일명 莫何邏繡支, 大幢主라고 하고 皁衣頭大兄 이상으로 이를 삼는다. 다음은 末若으로 中郎將에 비견되며 일명 郡頭라 하고 大兄 이상으로 삼고 천 명을 거느린다. 이하는 각각 등급이 있다.[45]

위의 내용은 고구려의 무관과 관련된 기록으로서 가장 먼저 대모달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조의두대형(위두대형)을 소지하고 있어야 했다. 묘지명 자료에 의하면 장군으로 불리는 것도 위두대형부터였다.[46] 또한 6세기 중엽 이후 지방장관 가운데 욕살 역시 위두대형이 맡는 경우가 확인된다.[47]

위와 같은 관직들이 6~7세기를 배경으로 확인되고 위두대형을 長으로 하여 설치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일련의 관계가 위두대형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48] 즉, 관명을 '位頭'大兄 내지 皁衣'頭'大兄으로 삼은 것은

---

43) 이규호, 2017 「고구려 對盧의 성격과 역할」, 『사학연구』 127.

44) 이상의 내용은 이규호, 2017 「고구려 對盧의 성격과 역할」, 『사학연구』 127, 152-154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5) 『한원』 고려. "其武官曰大模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一名大幢主, 以皁衣頭大兄以上爲之. 次末若, 比中郎將, 一名郡頭, 以大兄以上爲之, 其領千人. 以下各有等級."

46) 『천남생 묘지명』 "年廿三改任中裏位頭大兄, 廿四兼授將軍, 餘官如故."

47) 高麗位頭大兄理大夫後部軍主高延壽, 大兄前部軍主高惠眞(『전당문』), 祖量, 本蕃任三品栅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고자 묘지명』).

5세기의 大位를 계승하는 최상위층 신분의 범주를 나타내는 징표이자, 관직과 관부를 조직함에 있어 위두대형 이상을 주요관서의 長으로 구성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49]

다음으로 『한원』에 의하면 위두대형의 이칭은 '中裏位頭大兄'인데, 이것은 중리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 착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50] 그렇다면 여타 형계 관명 이칭을 참조할 때, 위두대형의 이칭 역시 '~支'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때 주목되는 것이 위두대형과 같은 계층으로 묶이는 태대형의 이칭인 莫何何羅支이다. 유연이나 거란에서는 수령(長)의 칭호로서 莫何弗이 있고, '莫何'라는 용어에는 '大'의 의미가 있었다.[51] 그렇다면 같은 상위 5관에 莫何何羅支로도 불리는 태대형이 있음에서 위두대형의 이칭 역시 '莫何~支'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나-3에 위두대형 이상으로 삼는 대모달의 이칭이 '莫何邏繡支'였던 것으로 보아 일정 지위 이상을 지닌 집단(관서, 부대)의 長에게 '莫何'의 칭호가 부여되던 것으로 생각된다.[52]

이처럼 위두대형 이상이 하나의 특권 집단으로서 관제상 長官의 역할을 했다면, 그 아래의 관명들은 그 이하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한원』의 아래 내용들이 주목되었다.

나-4. 또 拔古鄒加가 있는데, 賓客을 담당하며 鴻臚卿에 比하고, 大夫使者(太大使者)

---

48) 위두대형의 등장을 태대형의 지위변화와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귀족연립정권의 성립과 관련된다고 본 바 있다. 본래 태대형이 맡았던 군사적 직무를 위두대형에게 넘기고 대대로 선임의 제1후보군으로서 변모했다는 것이다(임기환, 앞의 책, 234-235면).

49) 이는 신라에서 주요관서의 令에 대아찬 이상을 소지한 최상위 신분인 진골만이 임명되었던 점도 참고가 된다.

50) 이문기, 2000, 앞의 논문, 82면.

51) 荒川正晴, 1998 「北朝隋·唐代における「薩寶」の性格をめぐって」 『東洋史苑』 50·51에 의하면 唐代 소그드인들을 이끄는 자에게 주어진 관직으로서 薩寶가 있는데, 그보다 상위에는 摩訶薩寶가 있고, 大薩寶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摩訶는 '大'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莫何와 같은 음을 달리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52) 莫何邏繡支가 위두대형의 이칭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 삼는다. 또 國子博士, 太學博士, 通事舍人, 典客이 있어 모두 小兄 이상으로 이를 삼는다.[53]

나-5. 아버지 孚은 보장왕에게 中裏小兄을 받고 南蘇道史에 임명되었다. 大兄으로 승진하여 海谷府都督에 임명되었다. 또 太相으로 승진하여 司府大夫에 임명되고, 執垧事를 승습하였다.[54]

나-4에는 당시 고구려의 몇몇 관직들에 대한 정보를 전하면서 그에 뒤따르는 자격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특정 관직을 수행하는데에 특정 관명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나-5와 같이 지방관을 임명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기준의 자격조건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고구려의 도독은 褥薩이, 자사는 道使로도 불린 處閭近支가 있었는데, 이들을 임명하는데 있어 소형과 대형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나-3에도 무관직으로서 위두대형 이상이 임명되는 대모달 다음으로 대형 이상을 임명하는 末若이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에서 관직을 임명할 때 크게 세 층위의 자격요건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두대형, 대형, 소형이 바로 그것으로, 각 관부에 장관 이하 적어도 세 층위로 구성된 관원조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4의 拔古鄒加와 典客의 관계가 대표적일 것이다. 拔古鄒加는 鴻臚卿에 비하는 것으로서 설명되는데, 당의 홍려경은 賓客 및 凶儀를 관장하였고 屬司로는 典客과 司儀를 거느렸다.[55] 典客은 그 명칭으로 보아 당의 典客署 소속 관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당에서는 외국의 사신 접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다.[56]

---

53) 又有拔古鄒大加, 掌賓客, 比鴻臚卿, 以大夫使爲之. 又有國子博士・太學博士・通事舍人・典客, 皆以小兄以上爲之.

54) 『고을덕묘지명』. "父孚受寶藏王中裏小兄, 任南蘇道使, 遷陟大兄, 任海谷府都督, 又遷受太相, 任司府大夫, 承襲執垧事."

55) 『당육전』 권18, 鴻臚寺. "鴻臚卿之職, 掌賓客及凶儀之事, 領典客・司儀二署, 以率其官屬."

56) 『당육전』 권18, 鴻臚寺. "凡朝貢・宴享・送迎預焉, 皆辨其等位而供其職事. 凡酋渠首領朝見者, 則館而以禮供之."

따라서 拔古鄒加와 典客은 같은 직무를 관할하는 상하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임명되는 자격 조건 역시 太大使者와 小兄으로 상하관계를 이룬다. 양자는 主司와 屬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려기를 작성한 진대덕이 당에서 온 사신이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빈객에 관한 고구려 관제는 상대적으로 잘 파악했을 것이며, 기록에 남아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당시 고구려에 빈객과 관련한 관서가 있었다면 唐의 禮部에 비견될 만한 부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예부는 교육 역시 담당하였다. 나-4의 國子博士와 太學博士는 小兄을 조건으로 하는 교수직으로서 당에서도 확인되는데, 양자는 교육대상에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문무관 3품 이상,[57] 후자는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제가 교육대상이었다.[58] 마침 가-1에 의하면 3품에는 위두대형이, 5품에는 대형이 위치하고 있어 여기에 부합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두 형계 관명의 관제 상 의미를 고려하면, 국자박사와 태학박사는 해당 관원들의 자제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중앙관 뿐만 아니라 지방관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나-5는 그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도 역시 중앙관에 적용되었던 대형과 소형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가 5세기를 거치며 국가적으로 영토확장을 마무리한 이후 그에 수반하는 행정조직을 정비하였음을 시사한다. 그 과정에서 위두대형을 하한으로 하는 상위 5관이 장관층이 되어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그 예하에 대형과 소형을 하한으로 하는 관원조직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는 위두대형 이상을 장관으로 하는 주요관서에 한하고, 그에 딸린 屬司나 몇몇 독립 관사의 경우 그보다 격이 떨어지는 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형과 소형을 기준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한원』 고려 조 인용 「고려기」의 관제기록은 단순히 관명

57) 『당육전』 권21, 國子監. "國子博士掌教文武官三品已上及國公子・孫、從二品已上曾孫之爲生者,"

58) 『당육전』 권21, 國子監. "太學博士掌教文武官五品已上及郡・縣公子・孫、從三品曾孫之爲生者,"

의 서열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唐의 比品을 각 관명에 모두 붙이고 있는 것은 그 고하를 드러냄으로서 唐人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고구려의 현상을 본 찬자 진대덕이 고구려 관제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기록된 것이었다. 우리는 진대덕의 눈을 통해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 관제의 구조와 운영양상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원』 고려조에 인용된 「고려기」의 官名 관련 내용 가운데, 소사자와 위두대형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소사자는 하위분화되어 발위사자와 상위사자가 되었지만, 제3자인 唐人의 입장에서 이칭의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고 『주서』~『북사』에 보이는 사자계 관명의 불일치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보았다.

반면 위두대형의 경우 6세기 중엽을 시작으로 등장하여, 고구려 국정운영기구인 평대의 구성원이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평대는 상위 5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결정기구였다. 당시의 최고위 무관이나 지방관이 위두대형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면, 주요관서의 長 역시 위두대형을 하한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 이해하였다.

위두대형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관명의 설치가 아니라 기왕의 관제조직을 정비한 결과물이었다. 위두대형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장관과 같은 지위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녔고, 그 아래에 대형과 소형을 기준으로 관원체계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拔古鄒加와 典客, 國子博士, 太學博士를 통해 당시 고구려 관직체계 내 主司와 屬司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한원』 고려 조 인용 「고려기」의 官制 기록은 현상만을 나열한 것이 아닌, 찬자인 진대덕이 唐의 品階에 비하면서까지 기록한 당시 고구려 관제에 대한 이해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 관제에 대한 복원 뿐 아니라 그에 보이는 구조적 특징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6세기 중엽 이후 위두대형의 등장과 함께 고구려 관제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종래의 조직을 변화발전시킨 것이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6세기 중엽 이전에도 고구려에 일정한 관직과 관사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에는 일찍부터 有司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관명의 서열이나 성격 규정을 넘어 그에 수반하는 관직이나 관사의 존재도 함께 고려의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

논문투고일(2021. 10. 31),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2. 6)

참고문헌

葛繼勇, 2015「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한국고대사연구』 79.
김철준, 1975「高句麗·新羅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노중국, 2003「삼국의 관등제」, 『강좌 한국고대사』 2.
여호규, 2014『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_____, 2016「신발견 고을덕 묘지명을 통해 본 고구려 말기의 중리제와 중앙관제」, 『백제문화』 54.
이강래, 1998「7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이규호, 2017「고구려 對盧의 성격과 역할」, 『사학연구』 127.
이문기, 2000「고구려 막리지의 관제적 성격과 기능」, 『백산학보』 55.
_____, 2003「고구려 중리제의 구조와 그 변화」, 『대구사학』 71.
이성제, 2016「유민 묘지를 통해 본 고구려의 중리소형」, 『중국고중세사연구』 42.
임기환, 2004「4~7세기 관등제의 전개와 운영」,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宮崎市定, 1959「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朝鮮學報』 14.
吉田光男, 1977「『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
武田幸男, 1989「高句麗 官位制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_____, 1994「『高麗記』と高句麗政勢」, 『(于江權兌遠教授停年紀念論叢)民族文化의 諸問題』, 세종문화사.
荒川正晴, 1998「北朝隋・唐代における「薩寶」の性格をめぐって」, 『東洋史苑』 50・51.

王連龍, 2015「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誌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 2015-4.
_____, 2021「唐代高乙德墓誌所見高句麗官制考」, 『文史』 134.

Abstrac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Goguryeo's Official Titles in *Goryeogi* of *Hanwon*

Lee, Gyu-Ho *

Goryeogi of *Hanwon*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 to show the circumstances of Goguryeo in the seventh century. Its records about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odes not only show different aspects from previous periods, but also present the most detailed content, thus drawing attention early on. A review of Chinese records in the sixth and seventh century from *Zuseo* to *Hanwon* indicates that the structure of China's national administrative codes was already established in the middle sixth century when *Zuseo* was written. This means that it is needed to review these records too to restore the specific aspects of Goguryeo's national administrative codes those days.

There are some official titles that do not match between *Zuseo* and *Suseo* and *Hanwon*.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reviewed the description backgrounds of these historical materials and found that *Zuseo* and *Suseo* contained official titles of different lines from each other as they were based on different reference data. In the process, there was a mix of other titles whose ranks were unknown based on the names. Comparison between these history books and *Hanwon* shows that most official titles had correspondence between them with the records of official titles in *Hanwon* closer to the reality than the two history books.

Hanwon records that the top five Gwans made a decision over important issues in government operation, and they are understood to have the power to decide in major departments in the viewpoint of Dangins. According to epitaph materials found recently,

* Lecturer, Dongguk university.

they handled such government affairs through an organization called Pyeongdae, which was set up in the middle sixth century, when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odes were also arranged accordingly. Widudaehyeong that appeared in the middle sixth century was the core of this process, specify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minister of each department as well as the lower limits of the top five Gwans.

Key words : *Hanwon*, *Goryeogi*, national administrative codes, official title, Pyeongdae